

경찰 신고 시 참고 사항

1 가명 조서

- 피의자에게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가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시 가명 조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명은 비밀로 유지되며 이후 검사나 판사도 가명만 알 수 있습니다.

2 우편송달 주소지 변경

- 고소 과정 절차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송달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신뢰 관계인 진술 동석

- 경찰 조사 시 혼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신뢰 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을 지지해 주는 지인이나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담당자 등의 진술 동석이 가능합니다.

4 단독 진술 공간 확보

- 공개된 공간에서 피해 사실 진술이 어려울 때는 분리된 단독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요청합니다.

5 신고인 진술

- 피해의 경위 전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관이 필요에 따라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유를 묻는 경우, 정확한 수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으니 위축되지 말고 침착하게 진술하면 됩니다.

6 2차가해 대응

- 수사관이 피해를 자초했거나 행실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할 경우 2차피해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7 수사 기간

- 신고 직후 범인 검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일 경우 더 더딘 것 같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연락처 1366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지원 내용 전문 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 기관 등 연계 www.women1366.kr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연락처 02-735-8994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상담 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상담 시간 평일 13:00 ~ 17:00 지원 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www.cyber-lion.com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8-5801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www.sisters.or.kr
한국여성연대전화	상담 연락처 02-2263-6464,5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전화·면접·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5-1858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http://womenlink.or.kr



문의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02-2133-5329

본 리플렛의 내용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시민편,경찰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I · SEÖUL · U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누군가의 성적인 촬영물이 등의 없이 유포되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감추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리라고 상상하지만 현실의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어떡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피해자가 되도록 '피해자다움'을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소 성생활이 문란했다는데 진짜 피해자가 맞을까 의심스러운가요?
왜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애초에 가해자를 왜 만났을까요?
이런 물음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검열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모습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관계 영상을 남기자는 파트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자책하셨나요?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사전 예방도 어려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또한 피해촬영물을 규제 없이 유통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가 반복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신은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울 수도, 그저 당황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혼자서는 멈추기 어려운 피해와 폭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야말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첫 걸음과 피해 상황을 헤쳐나가는 다음 걸음을 도와, 오롯이 피해를 견뎌하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 유형별 대처

불법촬영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바닥을 보니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해 나와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2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3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4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법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유포피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예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지워 달라고 했고 당연히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2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3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4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 5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현행법상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촬영물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 모두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

- 1 불법촬영 또는 합의촬영 후 비동의 유포피해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2 최초 유포자 외의 재유포자를 고소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유포자를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하려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삭제 방법

- 1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 게시물 링크·제목·콘텐츠 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② 해당 사이트 내 신고 창구를 이용해 피해촬영물임을 알리며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이메일로 메일 발송 - 해당 게시물 내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신고
 - 사이트 내의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 사이트 내의 피해구제센터 이용해 신고

- 2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촬영물의 링크를 복사하고 영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신청을 합니다.
 (본인 인증 후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링크와 캡처본을 첨부해 신고)

- 3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SNS의 신고 창구**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고창구	주소
 텀블러	가이드라인 침해 신고 창구 (신고시 신분증 첨부, 미성년자는 신분증 없어도 신고 가능)	https://www.tumblr.com/abuse
 페이스북	사생활 보호권 침해 신고 창구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44059062408922
 트위터	개인정보 노출 신고 창구	https://help.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프로필 악용 사례 신고 창구	https://help.instagram.com/192435014247952?helpref=faq_content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이별을 통보하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뒀다며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불안해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이대로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협박문자, 통화 내용 녹취 등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3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만약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촬영물일 경우 협박죄 외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예전에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왜 불안할까요?

동의 없이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이 음란물로 유통, 소비되는 실태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몰래 찍힐지,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불안'은 새로운 피해 유형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카메라를 찾아보거나 본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음란물 사이트를 뒤져보는 것도 불안피해 증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포피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개인적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1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직접 요청합니다.
- 2 상대방이 삭제를 했다고 할 경우 대화를 기억하여 기록해 두거나, 음성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 3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습니다.
- 4 상담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지인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당신이 먼저 알았을 때, 어려워도 반드시 지인에게 알려야 신고, 고소 등 사건 처리 방법을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진 후 무방비 상태로 알게 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지지 속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회복의 조력자

피해촬영물이 계속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혼자 피해를 감당하거나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피해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법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신속히 찾아내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서서 피해촬영물을 추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알려거나 피해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지지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 시도를 망설일 때 강요하거나 독촉하는 대신 어렵게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피해자를 지지하는 당신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 경험 이후에도 일상이 흘러갑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압도되어 무력해질 수 있지만 무너진 듯한 인생은 도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갑니다. 문득 떠오르는 피해의 기억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다독여 삶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강인한 자신을 믿으세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